의 안 번 호	제 10 호
의결연월일	

의결사항

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연월일	2004. 5. 3

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(안)

의 안 번 호	10

제출연월일	2004. 5. 3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(문화관광부)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 :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(안 제4조)

나. 상담실 인원 : 상담실장 포함 4인 이내 (안 제7조)

다.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(안 제9조)

○ 자격 : 상담분야 학위 취득자

○ 임용방법 : 공개채용(서류심사 및 면접)

○ 임용연령 : 전임상담원 40세 이하, 상담원 35세 이하,
상담보조원 30세 이하

라. 상담원등의 정년 (안 제10조)

○ 상담실장 60세, 전임상담원 및 상담원 58세, 상담보조원 56세

마. 위탁운영 근거 마련 (안 제18조)

○ 청소년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바. 위탁운영시 예산지원 근거 마련 (안 제19조)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연간 89백만원

다. 합　　의 : 기획담당관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04.3.19 ~ 2004.4.8)결과 제출된 의견 및 반영여부

가) 전임상담원 1명 증원 : 미반영

나) 상담실장 정년삭제 : 미반영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천시청소년 상담실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상담실의 명칭은 사천시청소년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 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상담실은 사천시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상담실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행
2.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
3. 청소년관련 상담
4. 상담기법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
5.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
6.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
7.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
8.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
9. 상담실 홍보
10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운영협의회 구성)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청소년 상담실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대표, 관계공무원,청소년상담관련 전문인사,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의 기능 등)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
2.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· 진단 및 치료,문제점 협의
3. 상담실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분석
4. 청소년 상담관련 제반문제 협의

②협의회는 상.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개의 할 수 있으며,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실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상담원(전임상담원) 및 상담보조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구성)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,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1명,상담보조원 2명이내로 구성한다.

②상담실장은 상담경험이 있는자 또는 사회적으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 중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.

③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(이하 "상담원등" 이라 한다)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(이하 "임용등" 이라 한다)한다.

제8조(상담실장의 직무 등)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.

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자격과 임용) 상담원등의 임용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,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1. 임용등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하되 공개채용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.
2. 신규임용등의 연령은 전임상담원은 40세 이하, 상담원은 35세 이하,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한다.

제10조(신분보장 및 정년) ①상담원등은 제14조 및 제15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②상담실 직원의 정년은 상담실장은 60세,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은 58세, 상담보조원은 56세로 한다.

제11조(복무) ①상담원등의 복무는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며 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.
②야간 상담시간은 18:00~21:00 까지로 하며,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익일 오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③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수 있다.

제12조(보수) ①상담실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한다.
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③상담원등의 출장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은 6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있다.

제13조(경력산정) 상담원등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.

제14조(면직 등) ①상담원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.
1. 제7조제2항의 정년에 해당될 경우
2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3. 직제개편 또는 예산사정등 인력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
4.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②제1항제1호의 당연퇴직 시기는 생년월일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30일에,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 31일로 한다.

제15조(징계) 상담실 직원의 징계 등은 사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.

제16조(자원봉사자)①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
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상담방법)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전화,내방,사이버,서신,출장상담
2. 직접대응상담,집단상담,전화녹음상담

제18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운영 하는 자는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
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,시설관리책임,위탁의 취소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9조(예산지원)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20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상담실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.

〔별표 1〕

자 격 기 준 <제9조 관련>

구 분	자 격 기 준
상담실장	· 대학원의 상담분야【청소년(지도)학,교육학,심리학,사회복지(사업)학,정신의학,아동(복지)학등】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이상 경력자 ·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상담기관과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
전임상담원	·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자 ·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후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
상 담 원	·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【청소년(지도)학,교육학,심리학,사회복지(사업)학,정신의학,아동(복지)학 등】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·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상담보조원 (행정원)	· 2년제 이상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
※상담관련 분야는 청소년(지도)학,교육학,심리학,사회복지(사업)학,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등임

〔별표 2〕

경력산정 기준표<제13조 관련>

직종별	구분	경 력	환산비율
상담직	“갑”경력	· 대학전임강사 이상 경력 · 박사과정 이수연한(3년한) · 석사과정 이수연한(2년한) ·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요원이상 근무 경력(석사이상과정 이수후의 조교경력 포함) · 군경력(의무복무기관에 한함) ·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,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또는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	100%
	“을”경력	· 대학 시간강사(주당 8시간 이상) ·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·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의 조교경력	80%
	“병”경력	· 국가,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· 청소년상담실 행정원 근무경력 · 시장이 인정하는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	50%
상담보조원 (행정원)	경력	· 상담경력(상담직“갑”“을”“병”경력참조)	
		· 군경력(의무복무기간)	100%

※ 1. 초임 상한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
2.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
3. 관련학과는 청소년(지도)학,교육학,심리학,사회복지(사업)학,아동(복지)학 등

관련법령 발췌

청소년기본법

第61條 (地方靑少年相談室)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地方靑少年相談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.

청소년기본법시행령

제65조 (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)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. 다만,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은 별표 5와 같고,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

③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

제34조 (지방청소년상담실의 설치기준)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6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.<개정 1996.7.30>

②지방청소년상담실에는 최소한 개인면접상담실 2개소(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1개소), 집단상담실 1개소, 전화상담실 2개소에 상담전용전화 각 1회선(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1개소에 1회선), 심리검사실 1개소, 상담대기실 1개소,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1개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법

第31條 (缺格事由)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이 될 수 없다.

1.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
2.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
3.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,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
4.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
5.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
8.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